

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-6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2. 11 . 30 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☐ 제안이유

여성회관 특별 수강료의 인상을 고려하여 현 기준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며, 유아수탁료를 월단위기준외 1일단위기준을 추가로 신설하여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수강생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.

☐ 주요골자

가. 별표에 기재된 유아수탁료를 월기준외 1일기준 5,000원을 추가로 신설.(안 [별표] 4. 유아 수탁료)

나. 별표에 기재된 교육생 수강료를 각 5,000원~15,000원 인상하고 특별(교양)교육과정을 특별강좌교육과정으로, 주부대학을 여성(의식)교육으로 명칭을 변경함(안 [별표] 5. 교육 수강료)

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] 제2호 및 [별표] 제3호중 “요액”을 “금액”으로 한다.

[별표] 제4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유아 수탁료

구 분	기 준	금 액	비 고
교육수강생자녀	1인/1월	15,000원	오전, 오후반운영
	1인/1일	5,000원	주간교육에 한함

[별표]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교육생 수강료

구 분	기 준	금 액	비 고
기술교육과정	1인 1개월	15,000원-20,000원	○ 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○ 교육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도 10일이상 때에는 1월로 본다.
취미교육과정	1인 1개월	15,000원-20,000원	
특별강좌교육과정	1인 1개월	15,000원-30,000원	
여성(의식)교양교육	1인 1개월	15,000원-20,000원	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 · 과 · 소		사회복지과 ☎940-4448
입안자	사회복지과장	이 평 자
	여성회관관장	김 영 애
	담 당 자	유 연 옥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

개 정 안

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

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

[별표]

2. 여성회관 부속설비사용료

구 분	기 준	요 액	비 고
음향기기사용	(생략)	(생략)	(생략)
피아노	(생략)	(생략)	
영사기	(생략)	(생략)	
조 명	일반	(생략)	
	종합	(생략)	

[별표]

2. 여성회관 부속설비사용료

구 분	기 준	금 액	비 고
음향기기사용	(생략)	(생략)	(생략)
피아노	(생략)	(생략)	
영사기	(생략)	(생략)	
조 명	일반	(생략)	
	종합	(생략)	

[별표]

3. 냉·난방 사용료

구 분	기 준	요 액	비 고
대 강 당	(생략)	(생략)	(생략)
전 시 실	(생략)	(생략)	
회 의 실	(생략)	(생략)	

[별표]

3. 냉·난방 사용료

구 분	기 준	금 액	비 고
대 강 당	(생략)	(생략)	(생략)
전 시 실	(생략)	(생략)	
회 의 실	(생략)	(생략)	

[별표]

4. 유아 수탁료

구 분	기 준	요 액	비 고
교육 수강생자녀	1인/1월	15,000원	오전, 오후반운영

[별표]

4. 유아 수탁료

구 분	기 준	금 액	비 고
교육 수강생자녀	1인/1월	15,000원	오전, 오후반운영 주간교육에 한함.
	1인/1인	5,000원	

[별표]

5. 교육생 수강료

구 분	기 준	요 액	비 고
기술교육과정	1인1개월	10,000원- 15,000원	° 생략 ° 생략
취미교육과정	1인1개월	10,000원- 15,000원	
특별(교양) 교육과정	1인1개월	10,000원- 15,000원	
주부대학	1인1개월	10,000원- 15,000원	

[별표]

5. 교육생 수강료

구 분	기 준	금 액	비 고
기술교육과정	1인1개월	15,000원- 20,000원	°(현행과 같음) °(현행과 같음)
취미교육과정	1인1개월	15,000원- 20,000원	
특별강좌 교육과정	1인1개월	15,000원- 30,000원	
여성(의식) 교양교육	1인1개월	15,000원- 20,000원	